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 디지털금융검사국 담당자 김상록 (직위, 성명) 선임검사역 연락처 02-3145-7427
요청대상 행위	□ 수탁사가 자사 지분을 100% 가진 모회사로서, 수탁자 정보처리시스템에서 회사 내부망 내 정보처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송수신해야 하는 경우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가 가능한지 여부
판단	□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는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 합니다.
판단이유	 □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터넷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. ('전자금융감독규정, (이하 '감독규정') 제15조 제1항 제5호) ○ 다만, 다른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하는 등 업무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 하여도 됩니다. * 자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<별표7>에서 정한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(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2 제3항) □ 귀사가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하건데, 귀 사의 지분을 100% 가진 모회사는 계열사'에 해당되고, 해당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연결하는 것이므로, 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, 제2조2 제2항 제2호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. * "계열사"는 해당 회사와 주식보유 등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상법상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출자관계로 연결된 경우를 의미 ○ 다만, 필요한 서비스번호(port)에 한하여 연결하고, 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 제2조의2제3항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합니다.